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6 선고 2023가단17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임호진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6.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3. 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23. 1. 27. 접수 제23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21. 1. 1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여주시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번호: D
- 보증원금: 50억 3,510만 원
- 보증목적: 계약보증
- 보증상대방: 경기도 여주시장
- 보증기한: 2022. 10. 31.

2) E은행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번호: F
- 보증원금: 8억 5,000만원
-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보증상대방: E은행 여주지점
- 보증기한: 2022. 1. 17.(변경 2023. 4. 14.)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B이 채권자(여주시, E은행)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되, 여기서 "주채무"는 신용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의미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여주시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라. 여주시는 2023. 1.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여주시의 2022. 10. 26.자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보증이행으로 50억 3,51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3. 1. 27. E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한 다음 2023. 5. 2. 여주시에 50억 3,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3. 9. 14. 소외 회사와 B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차전119000호로 구상금 5,969,368,434원 및 그 중 50억 3,51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5. 4.부터, 874,413,630원에 대하여는 2023. 8. 21.부터 각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3. 10. 5. 소외 회사와 B에게 송달되어 2023. 10. 20. 확정되었다.

바. 한편 B은 2023. 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3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2023. 1. 27. 기준 시가 1,115,546,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2023. 1. 27.자 기준으로 최소 11,775,054,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여주시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보증이행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B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3. 1.

27.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다.

② B은 2023. 1. 27. 이전부터 각종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22. 10. 26. 이전부터 여주시에 한강(여주 내양적치장) 준설토(원석) 매각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일자에 계약 해지를 당하였으며 2023. 1. 19. 여주시가 원고에게 계약보증이행을 청구하는 등 원고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3~4개월 후인 2023. 5. 2. 여주시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와 B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항에 의할 때 보증기간의 도과 여부는 계약보증이행 청구시가 아니라 보증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증사고 발생일은 2022. 10. 26.로서 보증기간 내이다. 피고는 여주시가 2023. 1. 19.경에야 원고에게 계약보증이행 청구를 하였고 2022. 10. 31.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여주시에 지속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주시는 보증기간이 도과된 보증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2022. 10. 26.로 소급하여 고지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공익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여주시에 50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B은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여주시가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일을 소급하여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보증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당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주 양촌적치장 내지 당산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골재를 공급받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은 위 각 적치장에 있던 막대한 양의 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소외 회사나 B의 재산상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는 수 년 간 정상적으로 골재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위 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3. 1. 19.경 여주시의 골재반출금지 명령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외 회사의 골재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소외 회사에 수 년 간 골재 선급금까지 지급해 왔던 H이 갑작스러운 골재반출금지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소외 회사와 B의 말만 믿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부터 2022. 5.까지 B에게 20억 원 넘는 돈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하다가 소외 회사의 골재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직후 위 채권을 담보한다면서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B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 온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23. 3. 7. 소외 회사에 골재공급을 재개하고 앞으로의 대여금 및 선급금의 변제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당시 H은 이미 그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 내지 B이 소유한 책임재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여주시가 소외 회사와의 골재공급계약을 해제하여 더 이상 소외 회사의 골재공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내용증명의 발송을 피고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이성은

별지